#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약관(별표 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약관 및 고객 안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 가이드편 | 보험 약관 | 고객 안내사항 |
|---|---|---|
| · 목 차<br>· 보험용어 해설<br>· 주요내용 요약서<br>· 가입자 유의사항<br>· 본 상품 주요내용 | · 보통약관<br>· 특별약관<br>· 별 표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고객권리 안내문<br>· 주요 전화번호 / 주소 |

**☞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1
보험용어 해설..... 6
주요내용 요약서..... 8
가입자 유의사항..... 11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 주요내용..... 12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 주요내용..... 20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 주요내용..... 27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33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 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36
제1조(계약의 성립)
제2조(청약의 철회)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7조(계약의 소멸)
제8조(특별계정의 운용)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41
제9조(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장 보험금의 지급.....43**
제14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15조(연금의 지급)
제16조(해지환급금)
제17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제18조(소멸시효)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46**
제19조(주소변경통지)
제20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21조(환급금의 지급)
제22조(계약내용의 교환)
제23조(보험계약대출)

**제5장 분쟁조정 등.....48**
제24조(분쟁의 조정)
제25조(관할법원)
제26조(약관의 해석)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31조(준거법)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 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52**
제1조(계약의 성립)
제2조(청약의 철회)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7조(계약의 소멸)
제8조(특별계정의 운용)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56**
제9조(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제3장 보험금의 지급.....56**
제10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11조(연금의 지급)
제12조(해지환급금)
제13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제14조(소멸시효)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58**
제15조(주소변경통지)
제16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17조(환급금의 지급)
제18조(계약내용의 교환)
제19조(보험계약대출)

**제5장 분쟁조정 등..... 61**
제20조(분쟁의 조정)
제21조(관할법원)
제22조(약관의 해석)
제2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2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27조(준거법)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 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64**
제1조(계약의 성립)
제2조(청약의 철회)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7조(특별계정의 운용)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68
제8조(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제3장 보험금의 지급**..... 68
제9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10조(연금의 지급)
제11조(해지환급금)
제12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제13조(소멸시효)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70
제14조(주소변경통지)
제15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16조(환급금의 지급)
제17조(계약내용의 교환)
제18조(보험계약대출)

**제5장 분쟁조정 등**.....72
제19조(분쟁의 조정)
제20조(관할법원)
제21조(약관의 해석)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26조(준거법)

## 별 표

【별표1】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관한 사항..... 76

## 독립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78

#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
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추가납입보험료의 총납입한도는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함

**일시납보험료**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일시에 이전받은 금액으로 분기별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음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1)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은 버림,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 주요내용 요약서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취소

계약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무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계약 전·후 알릴 의무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②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공시이율 관련**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 연금개시 이후 지급받으시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금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개시이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정상연금 수령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간 400만원 한도로 하며, 세제관련법령 변경시 그에 따릅니다)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납입보험료의 2%(주민세 별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보험료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 주요내용

##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의 불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고,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퇴직연금보험 계약자 납입분 포함하여 400만원 한도)입니다. 단, 일시납보험료는 최초의 이전받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분기별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이전 전 계약의 경과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5년 이내 중도해지시[주1)] | 5년 후 중도해지시[주1)] |
|---|---|
| □ (해지환급금 - 실제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0%(주민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br>(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br>□ 납입보험료의 2%(주민세 별도) 해지가산세 부과 | □ (해지환급금 - 실제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0%(주민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br>(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주) 이전 전 계약의 경과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적용함.

다만, 5년 이내 해지할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 또는 주요내용 □ 상품의 특이사항 ③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 불입완료 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적립기간 종료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액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5%(주민세 별도)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연금액포함)은 6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시(일시금 수령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3년 1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연금외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액연금 | 가산연금 |
|---|---|
| 연금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 가입자격제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 상품구조

| 구 분 | 세부사항 |
|---|---|
| 연금지급개시나이(A) | 만55세 ~ 80세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br>· 연금개시전 보험기간<br>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br>· 연금개시후 보험기간<br>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 연금지급방법 | 매월, 매3월, 매6월, 매년 |
| 연금지급형태 | 균등설계형 |
| 보험료 납입기간 | 기본보험료 : 1~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55세납 ~ 80세납)<br>일시납보험료 : 일시납 |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br>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br>일시납보험료 : 일시납 |
| 가입나이 | 만 18세 ~ (A-1)세 |

단, 계약이전 받기전 계약과 계약이전 받은후 계약의 총납입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한도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최초 계약이전시 이체되는 이전금액인 일시납보험료로 구성됨

①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는 최고 월납 1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용하되, 월납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③ 일시납보험료 : 다른 금융 기관의 연금 저축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최초에 납입되며, 그 최초 이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합니다. 단, 일시납보험료는 분기별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①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부리하여 드리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위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전 전 계약의 경과기간 포함)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퇴직연금보험 계약자 납입분 포함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2%(주민세 별도)를 곱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 · 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 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7.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단, ③의 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지시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 보험료 산출기초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금리확정형보험상품과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 차이점**

○ 금리확정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확정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자산운용수익률, 시장금리 등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결정하며,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수익률) / 2

※ 지표금리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는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3년 1월 현재 적용이율은 연복리 4.2%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

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1종(적립형),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10년지급), 납입기간 20년만기, 월납 20만원]

| 구 분 | 목 적 | | 시기 | 비 용 |
|---|---|---|---|---|
| 보험관계 비용 | 계약체결 비용 | 판매보수 | 매월 | - |
| | | 유지보수 | 매월 | - |
| | 계약관리비용 | | 매월 |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4.5%(9,000원)<br>⋆납입기간이후: (매년)책임준비금의 0.1%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 해지시 | 아래도표 참조※ |

**※ 해지공제비용**

| 경과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이상 |
|---|---|---|---|---|---|---|---|---|
| 해지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해지공제비율 | - | - | - | - | - | - | - | - |

주) 해지환급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 추가비용 및 수수료**

| 구 분 | 목 적 | 시기 | 비 용 |
|---|---|---|---|
| 추가납입 보험료 | 계약유지·관리비용 | 추가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3.0% |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 1종(적립형),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10년지급), 납입기간 20년만기, 월납 20만원]

| 7년 이내 | 7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20년 이내 |
|---|---|---|
| 9,000(4.5%) | 9,000(4.5%) | 9,000(4.5%) |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저희 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이 있으며, 이를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의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차배당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률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 기준율 - 예정이율)

② 사업비차배당 : 연간 유지비 × 사업비차배당기준율

③ 위험률차배당 : 연간 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률
단, 위험률차배당률 : 상품별이재차익률(이재차손익/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기준율

□ 과거5년간의 배당률 및 배당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FY'07 | | FY'08 | | FY'09 | |
|---|---|---|---|---|---|---|---|
| |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 이자율차배당 | 연금 | 5.3% | 14,731 | 5.6% | 9,640 | 4.9% | 21,662 |
| | 연금신공시 | - | - | 5.8% | 189 | 5.3% | 397 |
| 사업비차배당 | | 40% | 6,030 | 21% | 3,804 | 8% | 2,212 |
| 위험률차배당 | | 80% | 2,239 | 80% | 1,831 | 50% | 1,206 |
| 총 계 | | - | 23,000 | - | 15,463 | - | 25,477 |

| 구 분 | | FY'10 | | FY'11 | |
|---|---|---|---|---|---|
| |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 이자율차배당 | 연금 | 5.0% | 31,448 | 5.2% | 40,243 |
| | 연금신공시 | 5.3% | 1,309 | 5.2% | 1,377 |
| 사업비차배당 | | 5% | 1,909 | 3.3% | 1,599 |
| 위험률차배당 | | 35% | 775 | 14.6% | 787 |
| 총 계 | | - | 35,441 | - | 44,006 |

주)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은 FY'12 기준 4.0%입니다.

##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적립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 주요내용

##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의 불입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 그 이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해지환급금 -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0%(주민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액×(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5%(주민세 별도)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연금액포함)은 6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시(일시금 수령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3년 1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연금외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액연금 | 가산연금 |
|---|---|
| 연금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 가입자격제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상품구조

| 구 분 | 세부사항 |
|---|---|
| 연금지급개시나이(A) | 만55세 ~ 80세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br>· 연금개시전 보험기간<br>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일시납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br>· 연금개시후 보험기간<br>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 연금지급방법 | 매월, 매3월, 매6월, 매년 |
| 연금지급형태 | 균등설계형 |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

| 구 분 | 세부사항 |
|---|---|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
| 가입나이 | 만 18세 ~ (A-1)세 |

**□ 보험료 납입한도**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 그 이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①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부리하여 드리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험료 산출기초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금리확정형보험상품과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 차이점**

○ 금리확정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확정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자산운용수익률, 시장금리 등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결정하며,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수익률) / 2

※ 지표금리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는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3년 1월 현재 적용이율은 연복리 4.2%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2종(거치형),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10년지급),
일시납 1천만원]

| 구 분 | 목 적 | | 시기 | 비 용 |
|---|---|---|---|---|
| 보험관계 비용 | 계약체결 비용 | 판매보수 | 일시 | - |
| | | 유지보수 | | |
| | 계약관리비용 | | 일시 | *보험료납입시: 기본보험료의 0.5%(50,000원)<br>*납입기간 이후: (매년)책임준비금의 0.1%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 해지시 | 아래도표 참조※ |

**※ 해지공제비용**

| 경과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이상 |
|---|---|---|---|---|---|---|---|---|
| 해지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해지공제비율 | - | - | - | - | - | - | - | - |

주) 해지환급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 □ 추가비용 및 수수료

| 구 분 | 목 적 | 시기 | 비 용 |
|---|---|---|---|
| 추가납입 보험료 | 계약유지·관리비용 | 해당사항없음 | |

###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 2종(거치형),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10년지급),
일시납 1천만원]

| 초회 |
|---|
| 50,000원(0.5%) |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저희 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이 있으며, 이를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의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차배당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률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 기준율 - 예정이율)

② 사업비차배당 : 연간 유지비 × 사업비차배당기준율

③ 위험률차배당 : 연간 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률
단, 위험률차배당률 : 상품별이재차익률(이재차손익/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기준율

□ 과거5년간의 배당률 및 배당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FY'07 | | FY'08 | | FY'09 | |
|---|---|---|---|---|---|---|---|
| |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 이자율차배당 | 연금 | 5.3% | 14,731 | 5.6% | 9,640 | 4.9% | 21,662 |
| | 연금신공시 | - | - | 5.8% | 189 | 5.3% | 397 |
| 사업비차배당 | | 40% | 6,030 | 21% | 3,804 | 8% | 2,212 |
| 위험률차배당 | | 80% | 2,239 | 80% | 1,831 | 50% | 1,206 |
| 총 계 | | - | 23,000 | - | 15,463 | - | 25,477 |

| 구 분 | | FY'10 | | FY'11 | |
|---|---|---|---|---|---|
| |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 이자율차배당 | 연금 | 5.0% | 31,448 | 5.2% | 40,243 |
| | 연금신공시 | 5.3% | 1,309 | 5.2% | 1,377 |

| | | | | |
|---|---|---|---|---|
| 사업비차배당 | 5% | 1,909 | 3.3% | 1,599 |
| 위험률차배당 | 35% | 775 | 14.6% | 787 |
| 총 계 | - | 35,441 | - | 44,006 |

주)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은 FY'12 기준 4.0%입니다.

##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거치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 주요내용

##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의 불입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 그 이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연금수령액×(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5%(주민세 별도)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연금액포함)은 6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시(일시금 수령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3년 1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연금외 가산연금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가산연금은 연금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 가입자격제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상품구조

| 구 분 | 세부사항 |
|---|---|
| 연금지급개시나이(A) | 만55세 ~ 제한없음 |
| 보험기간<br>(연금지급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 연금지급기간 | 1 ~ 25년 |
| 연금지급방법 | 매월, 매3월, 매6월, 매년 |
| 연금지급형태 | 균등설계형 |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
| 가입나이 | A세 |

단, 계약이전 받기전 계약과 계약이전 받은후 계약의 총연금지급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보험료 납입한도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가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 그 이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① 기본계약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부리하여 드리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가산연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험료 산출기초

###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금리확정형보험상품과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 차이점**

○ 금리확정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확정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자산운용수익률, 시장금리 등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결정하며,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수익률) / 2

※ 지표금리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는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3년 1월 현재 적용이율은 연복리 4.2%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3종(즉시형),남자 60세, 연금개시 10년지급, 일시납 1천만원]

| 구 분 | 목 적 | | 시기 | 비 용 |
|---|---|---|---|---|
| 보험관계 비용 | 계약체결 비용 | 판매보수 | 일시 | - |
| | | 유지보수 | | |
| | 계약관리비용 | | 일시 | 기본보험료의 0.5%(50,000원)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 해지시 | 아래도표 참조※ |

**※ 해지공제비용**

| 경과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이상 |
|---|---|---|---|---|---|---|---|---|
| 해지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해지공제비율 | - | - | - | - | - | - | - | - |

주) 해지환급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 추가비용 및 수수료**

| 구 분 | 목 적 | 시기 | 비 용 |
|---|---|---|---|
| 추가납입 보험료 | 계약유지·관리비용 | 해당사항없음 | |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 3종(즉시형),남자 60세 연금개시 10년지급, 일시납 1천만원]

| 초회 |
|---|
| 50,000원(0.5%) |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저희 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이 있으며, 이를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의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차배당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률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 기준율 - 예정이율)

② 사업비차배당 : 연간 유지비 × 사업비차배당기준율

③ 위험률차배당 : 연간 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률
단, 위험률차배당률 : 상품별이재차익률(이재차손익/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기준율

□ 과거5년간의 배당률 및 배당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FY'07 | | FY'08 | | FY'09 | |
|---|---|---|---|---|---|---|---|
| |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 이자율차배당 | 연금 | 5.3% | 14,731 | 5.6% | 9,640 | 4.9% | 21,662 |
| | 연금신공시 | - | - | 5.8% | 189 | 5.3% | 397 |
| 사업비차배당 | | 40% | 6,030 | 21% | 3,804 | 8% | 2,212 |
| 위험률차배당 | | 80% | 2,239 | 80% | 1,831 | 50% | 1,206 |
| 총 계 | | - | 23,000 | - | 15,463 | - | 25,477 |

| 구 분 | | FY'10 | | FY'11 | |
|---|---|---|---|---|---|
| | | 기준율 | 금액 | 기준율 | 금액 |
| 이자율차배당 | 연금 | 5.0% | 31,448 | 5.2% | 40,243 |
| | 연금신공시 | 5.3% | 1,309 | 5.2% | 1,377 |
| 사업비차배당 | | 5% | 1,909 | 3.3% | 1,599 |
| 위험률차배당 | | 35% | 775 | 14.6% | 787 |
| 총 계 | | - | 35,441 | - | 44,006 |

주)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은 FY'12 기준 4.0%입니다.

##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즉시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02–3771–1000　인터넷 www.kis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7411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679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145–711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
# 약 관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적립형)

##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 ”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적립금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이하 "일시납보험료"라 합니다)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

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2. 기본보험료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마)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이전 전 계약의 경과기간 포함)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퇴직연금 보험료를 포함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2%(주민세 별도)를 곱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 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제2항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지시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도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이하「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①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및 일시납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일시납보험료
   최초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통해 이전 받은 적립금이며, 해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일시납보험료는 분기별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분기별 300만원을 한도(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분기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

승낙일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
|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4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하며, 【별표1】 연금저축 공시이율 Ⅰ에 관한 사항 참조)로 하며,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제15조(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하여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제14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 제16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4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계약건별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제17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15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18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 <소멸시효> |
| --- |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 제1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5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제21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제22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분쟁조정 등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
# 약 관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거치형)

##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 ”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

| |
|---|
| 인율을 “예정이율”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마)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7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도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①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일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3항에 의한 이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0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하며, 【별표1】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관한 사항 참조)로 하며,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제11조(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하여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제10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일시납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0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계약건별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제13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11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14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 제15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1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7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제1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제1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분쟁조정 등

### 제2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2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2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
# 약 관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 계약이전 연금보험(1212.1) (즉시형)

##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 ”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

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마)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 제8조(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①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일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3항에 의한 이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장 보험금의 지급

### 제9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하며, 【별표1】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관한 사항 참조)로 하며,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제10조(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

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하여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제9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1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일시납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9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계약건별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최저보증이율>** |
| --- |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제12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13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 <소멸시효> |
| --- |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 제1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5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0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제1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1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분쟁조정 등

**제1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별 표

【별표1】

##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관한 사항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된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결정하며,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함

-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수익률) / 2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투자수익(「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비용(「투자지출률」)을 차감한 것으로 직전 12개월간을 합산하여 산출함

- 운용자산이익률 = [A / { 평균자산(B) - A/2}] × 100
  - ·A(투자수지) : 투자수익 - 투자비용
  - ·B(평균자산) : {직전 12개월말자산 + ∑(해당월전월까지 월말자산 ×2) + 해당월말자산} / 24

② 지표금리수익률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국고채」,「회사채」,「통화안정증권」,「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하며, 각 지표의 수익률은 직전 3개월 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함

- 지표금리수익률 = (A1 + A2 + A3 + A4) / 4
  - ·A1 : 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4 :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dfrac{Mi(-3) + Mi(-2)\times 2 + Mi(-1)\times 3}{6}$

Mi(-3)은 직전 3개월, Mi(-2)는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주) 1.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2.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4.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5.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상품공시 적용이율 참조**

# 독립특별약관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Memo

Memo